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관련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관련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48조의7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제12호 삭제).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관련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 48조의7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8조의7 제1항).
-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의 징수·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4항).
- 위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6조 제3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2. 삭제	
2의2. ~ 11. (생략)	2의2.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삭제	
<u>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삭제></u>
<u>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u>	<u><삭제></u>

현행	개정안
<u>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u> 12의2. ~ 25. (생략) ④ (생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민간분야 침해사고 신고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민간분야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5.
DDoS 공격	123	122	213	285	167
악성코드 감염·유포	234	347	300	229	89
시스템 해킹	283	673	764	1,373	503
계	640	1,142	1,277	1,887	759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안 제48조의7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조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²⁾,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일종임.

- 또한,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기능이 유사한바, 이미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
- 1)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제76조 제3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삭제).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사업장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³⁾.

○ 다만, 「행정기본법」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⁴⁾,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를 고려할 때 침해사고의 횟수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과 횟수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 또한, 현행 제48조의4 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이에 맞추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illegible]

개 정 안	수정의견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 ② ~ ④ (생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타 입법사례 및 징수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국세채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상 규정⁵⁾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력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은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기존 과태료의 보완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재의

5)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도입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상한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0586호,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